

국교생 학원 과외교습 전면허용

교육부 지정기간중 국·영·수 등 일반과목도 가능

교육부는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민학교 재학생에 대한 일반과목 학원 과외교습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를 오는 5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국회 교육위 정례회의에서 지난해 6월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에서 보류된 관련 법안을, 현재 숙셈학원 등에서 변칙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영·수(산수) 등 일반과목 과외교습을

허용하는 쪽으로 손질해 국회에 정식제출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행법의 “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해 학원 등에서 교습받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의 대상에 국민학생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체능 및 기술 외에 일반과목 학원 과외교습이 금지돼 있는 국민학생들도 지역 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기간 안에 일반과목을 학원에서 과외교

습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유치원 과외 교습을 금지하려던 계획을 바꿔 유치원생은 과외금지 대상에서 계속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다시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4월에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한 뒤 5월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